

## 1. 개정이유

제조소등 사용 중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위임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행정상 제재처분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며, 위험물 운반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시 안전조치의 내용 등 신설(안 제23조의2)

위험물 취급설비에서 위험물 제거, 관계인 외 사람의 출입금지 조치 등을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정하고, 관계인이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를 정함.

나. 행정상 제재처분의 가중요건 정비(안 별표 2 제1호다목·라목)

행정처분의 가중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적발시로 변경하고,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비하며, 가중처분시 과거 처분이력의 포함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운반자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별표 24 제1호·제5호)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교육시간, 교육시기 등을 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강습교육)의 과목을 정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사용 중지 및 재개의 절차)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탱크·배관 등 위험물 저장·취급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의 제거
2. 관계인 외 자의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및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3. 기타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의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 신고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합한 이행
2.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의 경우: 사용중지 기간동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적합한 직무 수행

제5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이라 함은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을 “이란 별표 20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I의 규정에 의한”을 “I에 따른”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용하여야”를 “운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위반행위를 한 날”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부과된 처분에 한하여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4 X 제2호 중 “수압시험”을 “내압시험”으로 한다.

별표 5 I 제7호 단서 중 “제2류와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II 중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4 I 제2호라목 단서 중 “또는 창의 부분”을 삭제한다.

별표 24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최초 선임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8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안전원
	위험물운반자	4시간	가.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 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 년마다 1회	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 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 년마다 1회	기술원

별표 24 제1호 비고 제1호 중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  
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  
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  
과목 중”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후단 중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  
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  
습교육”로 하고, 같은 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 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 위험물운반에 관한 안전기준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 비작동법 ·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별표 25 제8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2호  
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 별표 24 제1호 및 제5호, 별표 25 제9호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0일
2. 제23조의2, 제70조제1항, 별표 25 제8호,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21일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험물 운반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2022년 6월 10일 이전에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23조의2(사용 중지 및 재개의 절차)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탱크·배관 등 위험물 저장·취급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의 제거</u></li> <li><u>2. 관계인 외 자의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및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u></li> <li><u>3. 기타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u></li> </ol> <p><u>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의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u>③ 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 신고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을 확</u></p>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술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한 운반용기가 별표 19 I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위험물의 운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용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술원의 원장은 운반용기 검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의 원장은 전년도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

-----  
-----  
-----  
-----  
-----

③----- 제2항에 따른 -----  
-----  
----- I에 따른 -----  
-----  
-----  
----- 교부해야 -----.

④-----  
-----  
----- 운용해야 -----.

⑤ -----  
-----  
----- 보고해야 -----  
-----  
-----  
----- 제출해야 -----.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3항-----  
-----

